

# 가상자산기본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19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김성원 · 김상훈 · 고동진  
박성훈 · 최보운 · 안철수  
구자근 · 안상훈 · 김선교  
송석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시행되어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어 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도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업자 체계에 대한 규율은 미비한 상황임. 예컨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취급, 외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가상자산전담중개업에 대한 규율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국한되어 있던 가상자산 법 제도를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가상자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기본적인 진입규제인 신고의무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제외한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 시 신고의무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무,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거래기록의 보존, 정보공시 의무, 이해상충의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사항에 대해 규율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 마.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을 두어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 바.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상

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관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사.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을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대여, 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 등 가상자산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자.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가상자산기본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국가 정책을 통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이란 지급이나 결제를 위해 발행되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환이 보장되는 가상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발행될 것
  - 나. 법정통화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다. 발행자에 의하여 법정통화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로 상환이 보장될 것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될 것
3.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4.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마.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바. 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5.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이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

하는 자로 제2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전문이용자”란 가상자산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이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이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는 일반이용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일반이용자”란 전문이용자가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9. “가상자산전담중개업무”란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가상자산의 용자 등 신용공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11.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이란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가상자산산업”이란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 및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

제6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3.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5.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⑦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가상자산 발행 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려는 경우(국  
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발행 가상자산별로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가상자산의 기술적 정보
3. 가상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정보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발행량 및 유통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신청서 및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신고  
의 방법·절차,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8조(신의성실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영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  
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영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  
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내부통제기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11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2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

2. 수수료 등 거래 비용에 관한 정보

3. 손실 위험성에 관한 정보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가상자산의 가치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의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차별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적·성별·학

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특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외환거래질서 유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 및 보고)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지원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의 공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4장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에 대한 특례

제20조(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의 인가) 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외국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

하는 가상자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둔 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이 법에 따라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일 것
3.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  
위하고자 하는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춘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나 외국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  
무상태를 갖춘 것
  - 나. 최근 3년간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

9.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22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이해상충 방지, 가상자산거래 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가의 내용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예비인가) ① 제20조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과 이용자 간 이해상충방지, 가상자산거래 시장

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인가요건의 유지 및 인가의 취소) 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제20조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이용자의 자산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4조(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 등록) ① 제20조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치유지형 가상자산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등록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용도,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
3.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4.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기반기술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준비자산의 구성, 보관, 운용 방식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에 대한 상환에 관한 사항

7.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

8. 가치유지형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계획

9.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발행 준거 통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등록의 내용 및 보완 요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또는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 및 신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등록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시의무) 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한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및 신고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사항이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이용자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기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환) 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법정통화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보유자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에 연동된 법정통화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발

행·상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준비자산 구성 및 관리) 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의 발행 잔액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자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에 연동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현금

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다. 만기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국채 또는 외국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③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관리기관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준비자산에 대하여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비자산의 내용과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매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준비자산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그 자산이 준비자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준비자산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준비자산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준비자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관리기관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준비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2. 해산·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28조(이자 등의 지급 제한) 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보유에 따

른 이자(이에 준하는 금전적 혜택 등을 포함한다)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지급 제한은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인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 제5장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특례

제29조(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승인)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1.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유형 및 상품의 결정
3.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업무
4. 그 밖에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자 자산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명백히 저해될 경우
3.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0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30조(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취급 관련 이용자 보호) ①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구조·위험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적합성 기준을 충족할 것
2.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총위험노출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미종결 거래의 정리 또는 위험 경감에 필요한 조치만을 수행할 것
4.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거래를 개시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5.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거래내역 및 위험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관리, 이용자 자산의 보호, 청산 및 손실 분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상근 임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31조(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관한 적용배제)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과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시장에 대하여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장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의 지정

제32조(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일 것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3. 3천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로서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가상자산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가 아니고는 가상자산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전문이용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대여, 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전문이용자에 대한 신용공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방식 및 한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34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5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4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감독 및 처분 등

제36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4조를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

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②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2.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 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40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42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

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

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은 자

3. 제23조에 따라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가 취소된 이후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을 영위한 자

4. 제20조에 따른 가치유지형 가상자산 발행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치유지형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32조에 따른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전담중개업을 영위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전담중개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발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제한되거나 승인이 취소된 후, 그 제한된 또는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⑤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몰수·추징)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발행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보존 또는 파괴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보고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26조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준비자산을 적법하게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중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 제35조제2항에 따른 통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보고한 자

15.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명령·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종전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신고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른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나목·다목·라목 중 “제7조”를 각각 “「가상자산기본법」 제6조”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제7조”를 각각 “「가상자산기본법」 제6조”로 한다.